

『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난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‘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’를 지정 고시함
-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('19. 9. 4.)에 따라 국비 (총 60억) 대비 지방비 20%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,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, 제4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기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- 설립일 : 2005. 9. 1.
- 조직 및 인원 : 4실 7본부 31팀, 154명
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-5
- 기관 주요사업

- 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사업
-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
-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-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나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
- 사업기간 : 2021 ~ 2025년(5년간)
- 총사업비 : 36,000백만원(국 30,000, 도 1,800, 시 4,200)
 - ※ 연간 사업비 : 7,200백만원(국 6,000, 도 360, 시 840)
- 출연금액 : 금840백만원
 - ※ 1차년도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금액
- 사업내용
 - 유망 기술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
 -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
 -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 성장 지원 등

다. 추진경과

- 2019. 9. 27. : 강소특구 지정신청서 제출
- 2020. 1~6월 :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현장 확인 및 타당성 심사
- 2020. 7. 27. :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의결
- 2020. 8. 28. :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라. 기대효과

-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, 연구소기업·

첨단기술기업 설립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-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지구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,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,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 및 제58조의2
-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동의안」 은,
 -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(20.8.28.)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60억원(국비 300, 도비 18, 시비 42)을 투입하여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·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,
 -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·지원을 통해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, 연구소기업·첨단기술기업 설립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